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규정

(제정 2019. 6. 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실험동물 및 동물실험의 적절한 관리를 통하여 동물실험에 대한 윤리성 및 신뢰성을 높여 생명과학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전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하며, 위원회의 영문 명칭은 Jeonju University 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 : ‘jjIACUC’로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교 내의 동물실험시설을 이용하여 동물실험을 실시하는 연구·조사에 관한 심의, 교육 훈련 및 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용어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동물실험’이란 교육·시험·연구 및 생물학적 제제(製劑)의 생산 등 과학적 목적을 위하여 실험 동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험 또는 그 과학적 절차를 말한다.
2. ‘실험동물’이란 동물실험을 목적으로 사용 또는 사육되는 척추동물을 말한다.
3. ‘동물실험시설’이란 동물실험 또는 이를 위하여 실험동물을 사육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실험동물생산시설’이란 실험동물을 생산 및 사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운영자’란 동물실험시설 혹은 실험동물생산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 실험 또는 교육에서의 동물실험계획(동물실험이 당해 연구계획의 일부인 경우 그 일부에 한함)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 심의 및 승인에 관한 사항
2. 실험동물의 생산·도입·관리·실험·이용·사후처리와 이와 관련된 자 및 종사자의 교육훈련 등에 대한 심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해당 동물 실험시설이 제정한 내규의 심사 및 운영 실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실험동물의 윤리적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총장 또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조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총장이 위촉한다. 다만, 해당 시설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해당 시설과 이해관계가 없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총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 포함하되,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1. 「수의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수의사
2. 「민법」 제32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설립·등록된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3.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법학을 담당하는 교수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동물보호·복지를 담당하는 교수
5. 그밖에 실험동물의 윤리적 취급과 과학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자
-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의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④ 위원장의 해임이나 사임의 경우 잔여 임기와 관계없이 신임 위원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 ⑤ 모든 위원은 위원으로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작성하여 사무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은 심의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책임연구자 및 연구의뢰자에게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은 책임연구자나 연구의뢰자가 위원회의 위원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해당 연구와 관련된 사항의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및 자문위원) ① 동물실험신청서의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 구성위원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정원으로 1인 이상의 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은 간사로 하여금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을 미리 검토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검토를 한 간사는 그 검토내용을 위원회에서 설명해야 한다.
- ④ 위원장은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 위원회 외부에서 자문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제8조(사무국) ① 위원회의 제반 행정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에 간사 등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상근인력을 두며, 총장이 임명한다.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전항의 단서에 의한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당사자 또는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④ 위원회의 심의대상인 연구 또는 이용에 관련이 있는 위원은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 ⑤ 총장은 본교에서 수행하는 연구 등에서 동물실험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검역본부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권한 및 의무) ① 위원회는 동물실험이 「동물보호법」 제13조의 원칙에 부합하게 시행되도록 지도·감독하며,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 또는 종사자에 대하여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심의대상인 연구·개발 또는 이용에 관여하는 위원은 해당 연구·개발 또는 이용과 관련된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위원회는 동물실험시설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사항이나 시설이 윤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의 심의·의결과 관련된 모든 과정은 독립적이며, 의결된 사항에 대해 총장은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제11조(심의 등) ① 본교에서 동물실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모든 연구자는 위원회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동물실험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위원회의 심의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미 승인받은 동물실험계획을 변경하고자하는 경우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동물실험계획 변경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위원회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동물실험계획 심의평가서”를 동물실험실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동물실험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되, 그 결과를 승인, 보완 및 수정, 부결로 결정한다.

1. 동물실험계획의 윤리적, 과학적 타당성
2. 실험담당자의 안전보호에 관한 대책
3. 실험동물종의 선정 및 사용 동물수의 적합성과 타당성
4. 저침습성 처치, 조직배양 등 대체방법에 의한 해당 동물실험의 대체 가능성
5. 적절한 진정, 진통 및 마취법
6. 인도적인 실험종료 및 안락사를 취하기 위한 기준 설정
7. 동물실험 경험 및 훈련 여부
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④ 동물 구매는 동물실험계획이 승인된 후에 진행할 수 있다.

- ⑤ 동물실험계획 승인 후 위원회는 준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 ⑥ 동물실험실시자는 동물실험 종료 후 위원회에 승인사항과 이상 없음을 보고한다.

- ⑦ 동물실험과 관련된 문서는 해당 연구가 종료된 이후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⑧ 심의와 관련된 모든 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2조(폐쇄조치 등) ① 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동물실험을 수행한 경우 “전주대학교 동물실험 윤리위원회(jjIACUC)”의 승인을 받은 연구자의 실험 또는 연구라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위원장은 승인된 동물실험계획서에 따라 연구가 수행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 ③ 위원장은 본교 내 동물실험시설이 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따르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폐쇄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3조(심의비 등) ① 연구책임자는 심의에 필요한 비용을 별도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 회의, 심사에 참여한 위원 및 의견청취를 위해 출석한 관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보고) 위원장은 동물실험계획서의 명칭, 검토한 문서 및 일시, 심의결과 등에 관한 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세부사항)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주대학교 표준운영지침(jjIACUC SOP)으로 따로 정한다.

제16조(기타사항)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규를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 약 서

소속 및 직위				
성명		주민등록	-	
한자		번호		
주요 경력				
주소	사무실			
	자택			
연락처	연락처(사무실)		휴대폰	
	E-mail		FAX	

위 본인은 전주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직(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업무를 엄정하고 성실하게 추진함은 물론, 본인 소속 기관 또는 단체의 재직기간 및 이후에도 업무과정에서 지득한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는 등 부당하게 활용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속 :

성명 : (인)

전 주 대 학 교 동 물 실험 윤 리 위 원 회 장 귀 하

동물실험계획 승인신청서

본 신청서는 전주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검토합니다. 관련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신청서의 승인 작업기간은 접수 후 원칙적으로 15일이 소요되며, 승인여부 결과는 추후 개별 통지됩니다. 한글로 본 양식을 작성하여 동물실험계획승인신청서 원본 1부를 서면으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전자파일(이메일 또는 홈페이지 주소)도 별도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동물실험계획승인신청서의 내용이 미비한 경우 위원회는 연구계획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일 반 사 항							
1.1. 과제책임자							
성 명		소 속		직 위		동물실험 교육 이수번호	
연락처 (사무실)		휴대폰		E-mail			
1.2. 동물실험수행자							
성명	직위	휴대폰	E-mail	동물실험 교육 이수번호	역 할		

2. 기 승인 유무 및 승인 요청 사항 (해당사항에 V표)

- ☐ 처음 신청
- ☐ 기승인 (승인번호:)
- (재신청사유:)

3. 연구비 관련

연구비 지출원(해당사항에 V표)

- ☐ 국책과제 ☐ 산업체 연구비 ☐ 기관 자체연구비 ☐ 실습용 ☐ 기타 연구비

연구과제명 또는 실습과목명:

연구(실습) 목적:

※ 일반적인 기술(비전문가도 이해할 수 있게 간략하게 기술)

4. 동물 실험형태 (해당사항에 모두 V표)

☐ 재료채취 ☐ 외과적 처치 ☐ 유전·육종 ☐ 방사선 조사 ☐ 감염 ☐ 발암 ☐ 행동관찰

☐ 기타()

5. 특별한 주거(Housing) 및 사육조건 필요 유무

(예, Restraining Devices, Radioactive Materials / Other Biohazards, Infectious Disease)

6. 저침습성 처치, 조직배양, 컴퓨터 모의시험 등에 의한 해당 동물실험 대체 가능성 여부

7. 실험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해당 실험기간을 초과하여 실험이 진행될 가능성

☐ 있다

☐ 없다

8. 사용 동물종 (해당사항에 Check) ※여러 종의 동물을 이용할 경우 해당 동물 종에 따라 별도 작성

☐ Mouse ☐ Rat ☐ Guinea Pig ☐ Rabbit ☐ Hamster ☐ Dog ☐ Cat ☐ Pig ☐ Gerbil

☐ 기타 ()

8.1. 세부내용

계통명

동물구입처(Maker)

품 질 구 분

☐ SPF(Specific Pathogen Free) ☐ CL(Clean) ☐ CV(Conventional) ☐ Germ Free ☐ 무 확인

동 물 규 격

체중

g / kg

주령

weeks

Pregnant

days

마리수

♂,

♀

8.2. 해당 동물 종을 선택한 합리적 이유

8.3 사용 동물수에 대한 합리적 근거사유(가능하면, 동물의 수를 산출한 통계학적 근거 제시)

9. 실험동물실 이외의 장소로 동물의 반출 혹은 외부 연구시설에서 동물을 반입할 경우, 그 필요 사유

10. 실험방법(프로토콜) 개요

※ 외과적 처치를 포함하지 않는 실험인 경우

※ 외과적 처치를 포함하는 실험인 경우, 수술방법

수술 후 관리방법 (해당될 경우 해당 사항에 모두 V표)

☐ 항생제 투여 ☐ 진통제 투여 ☐ 수액처치 ☐ 기타()

※ 복수의 대규모 수술 실험(Multiple Major Operative Procedures)을 시행하는 경우, 그 필요 사유
- 다만, 원칙적으로 불허함

11. 동물이 경험하는 통증 및 스트레스의 정도 (해당사항에 V표)

☐ Grade A: 생물개체를 사용하지 않는 실험, 원생동물, 무척추동물을 사용하는 실험

☐ Grade B: 척추동물을 사용하지만 거의 고통을 주지 않는 실험

☐ Grade C: 척추동물에게 약간의 스트레스 혹은 단기간의 작은 통증을 주는 실험

☐ Grade D: 척추동물에게 회피 할 수 없는 스트레스 혹은 통증을 주는 실험

(진정제, 진통제, 마취제 등을 사용)

☐ Grade E: 척추동물에게 회피 할 수 없는 스트레스 혹은 통증을 주는 실험(진정제, 진통제, 마취제 등을 사용하지 않음. 사용될 경우 실험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실험)

※ Grade E의 선택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나, 연구목적상 분명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위원회 승인 후 수행

12. 동물이 경험하는 통증 및 스트레스 경감조치 관련

12.1. 진정제, 진통제, 마취제 등의 사용방법 (11 항목의 Grade D를 선택한 경우 기술함)

※ 마취제(Anesthetics)와 근이완제(Paralytic Agent)를 병용하는 경우, 병용사유

12.2. Grade E를 선택한 분명한 연구 사유 기재 (11 항목의 Grade E를 선택한 경우 기술함)

13. 동물에 극도의 통증 또는 스트레스를 가하는 결과가 예상될 경우, 인도적인 실험종료(Humane Endpoints) 또는 안락사를 취하기 위한 기준

14. 안락사 및 사체처리방법 [마취제 사용(종류, 용량 등 기술), 경추 탈구 등 / 보관장소 및 사체처리업체명 기술]

15. 실험자를 위한 작업환경의 안전성 확보 여부

16. 해당실험이 불필요한 중복실험이 아님을 설명(가능하면, 대체방법 탐색 경위 등을 기술)

본 연구수행을 위하여

1. 실험동물의 윤리적 사용과 3R원칙에 따라 동물실험의 수행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였습니다.
2. 동물보호법, 전주대학교 동물실험지침 및 전주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서 검토 후 승인한 동물실험 방법을 준수하겠습니다.
3. 과제 승인 기간은 최대 1년임을 확인하였으며, 1년이 초과될 경우 재승인을 받겠습니다. 또한 승인된 계획을 변경할 경우 동물실험계획변경신청서를 통해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 알리고 승인을 받겠습니다.
4. 과제책임자로서 등록된 실험수행자들이 실험동물의 윤리적 사용과 승인된 동물실험 방법을 준수하도록 책임·지도하겠습니다.
5. 위 사항의 이행과 함께 위원회 및 동물실험시설 운영자의 결정에 적극 협조하고 따를 것을 서약하며 본 동물실험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과제책임자

(인)

전 주 대 학 교 동 물 실험 윤 리 위 원 회 장 귀 하

동물실험계획 심의평가서

접 수 번 호		평 가 일 시	20 . . .
(기 접 수 번 호)			
동물실험 과제명			
실 험 기 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심의 평가 기준>

1	동물실험계획 승인을 신청한 목적과 근거 ☐ 적합 ☐ 부적합	7	동물의 고통과 스트레스에 대한 평가의 적절성 ☐ 적합 ☐ 부적합
2	실험자의 교육이수 또는 훈련도·경험도의 적정성 ☐ 적합 ☐ 부적합	8	Grade D에 해당되는 경우, 진정·진통·마취제의 사용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3	특별한 주거 및 사육조건의 필요성 ☐ 적합 ☐ 부적합	9	Grade E에 해당되는 경우, 선택한 연구사유의 타당성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4	해당 동물실험계획의 대체방안에 대한 설명 ☐ 확인 ☐ 미확인	10	인도적인 실험종료 또는 안락사를 취하기 위한 기준 ☐ 적합 ☐ 부적합
5	요구한 동물 종과 수의 타당성 (동물 수를 산출한 통계학적 근거의 제시) ☐ 적합 ☐ 부적합	11	동물의 안락사 방법의 적절성 ☐ 적합 ☐ 부적합
6	동물실험 방법(프로토콜)의 적정성 ☐ 적합 ☐ 부적합	12	실험담당자의 안전에 대한 대책 ☐ 적합 ☐ 부적합
	※ 복수의 대규모 수술 실험 수행 시 필요성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13	불필요한 중복실험 가능성에 대한 설명 ☐ 적합 ☐ 부적합

<종합 심의평가 결과 및 의견>

결 과	의 건	
☐ 원안 승인 ☐ 수정 후 승인 ☐ 수정 후 재심 ☐ 불 승 인		
	평가위원	(인)

동물실험계획 변경승인 신청서

기 승인번호								
과제명 (한글/영문)								
과제책임자	소속	직급	성명	연락처	비상연락처			
실험변경 내용	☐ 비생존수술에서 생존수술로 변경 ☐ 동물 사용 마리수의 증가 ☐ 진정·진통·마취 방법 ☐ 안락사방법 ☐ 실험기간의 변경 또는 3개월 이내의 실험기간연장 ☐ 그 외 실험방법 등 (변경사항 기입) ☐ 동물 종 ☐ 시료채취 및 투여, 장소 변경 ☐ 과제책임자 또는 실험수행자							
실험변경 사유								
변경내역	기존				변경			
수술법 변경								
동물종								
동물 사용수								
시료채취 및 투여, 장소								
진정·진통·마 취방법								
안락사방법								
실험기간변경 /연장								
과제책임자 또는 실험자	성 명	소 속	연락처	교육번호	성 명	소 속	연락처	교육번호
그 외								

동물실험계획 승인서

1. 과제책임자

성명	소속	직급	연락처	교육이수내용

2. 동물실험계획서

접수번호	
동물실험과제명	
실험기간	
사용동물종 및마리수	
동물이경험하는통증및 스트레스의정도	

3. 승인 사항

심의일자	
승인일자	
승인번호	
심의위원 의견	

전주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서는 상기의 동물실험계획을 승인합니다.

20 . . .

전주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장 (인)

(영문승인서)

jjIACUC Protocol Approval

1. Original Protocol Information

Protocol Title		
Principal Investigator	Affiliation	
	Name	
Study Period		

2. Approval

Review Date	
Approval Date	
Approval Number	

This animal care and use protocol was reviewed and approved by the jjIACUC.

20 . . .

Chairperson _____ (*signature*)

<별지 제6호 서식>

동물실험계획 재승인신청서

기 승인번호		실험기간	20 . . . ~ 20 . . .		
과제명 (한글/영문)					
실험목적					
승인실험기간	20 . . . ~ 20 . . . 총 (2, 3)년 승인 중 (2, 3)년째				
동물실험계획	☐ 변경없이 계속 ☐ 변경후 계속 (필요시 변경승인신청서 함께 제출) ☐ 기타 (동물실험계획의 취소 등의 경우 그에 대한 설명)				
승인 받은 실험 계획	1년차	(해당 년차의 사용 실험동물 종류 및 마리수, 안락사 방법 기재)			
	2년차				
	3년차				
역할	소속	직급	성명	연락처	교육이수번호
과제책임자					
실험수행자					
실험변경사항	최초 승인받은 실험계획과 다른 변경사항 있을 경우 간략히 기재				

동물실험시설 실태조사표

조사일자: 년 월 일
조 사 자: (인)

<실사 기준>

1. 시설기준 적합성: 온도, 습도, 환기횟수, 조도, 소음, 암모니아 가스 등
2. 사육용 기자재 적합성: Rack, cage, 물병, 자동급수 장치 등
3. 사육준비용 기자재 적합성: 싱크대, 멸균기, 청소용구 등
4. 깔짚, 사료, 물 등의 적합성: 보관상태, 해충유무, 유통기한 준수 등
5. 케이지 당 사육두수의 적합성
6. 위생상태: 동물실 내 위생상태, 케이지 상태 등

<시설별 조사내용>

시설명(번호)	지적사항*

* 지적사항이 많을 경우 별지를 사용할 수 있음

20 년 월 일

전주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장 (서명)

동물실험 실태조사표

조사일자: 년 월 일
조 사 자: (인)

<조사 기준>

승인된 동물실험계획서 준수 여부를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과제별로 조사한다.

1. 과제책임자, 동물실험담당자: 변경 여부
2. 실험형태: 재료채취, 외과적 처치, 유전·육종, 방사선 조사, 감염, 발암, 행동관찰 등
3. 특별한 주거 및 사육조건 준수 여부
4. 실험기간: 승인 전 실험 착수, 기간 종료 후 실험 지속 등
5. 사용 동물: 동물 종, 계통, 구입처, 품질, 규격, 사용 수 등
6. 실험방법(프로토콜) 준수 여부
7. 진정·진통·마취제: 사용방법, 해당 약제 구입 및 사용 내역, 수행자 등
8. 인도적 종료시점 준수 여부
9. 안락사 및 사체처리: 방법, 해당 약제 구입 및 사용 내역, 수행자 등
10. 동물실험과 관련된 불만사항
11. 기타 승인된 동물실험계획서 내용의 준수 여부

<과제별 조사내용>

일련 번호	승인번호	과 제 명	과 제 책임자	지적사항 및 불만사항*

* 지적사항이 많을 경우 별지를 사용할 수 있음

20 년 월 일

전주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장 (서명)